외화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의 분류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연결손익계산서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을 분류하기 위해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B70~B76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해당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도계약이지만,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 요청서에서는 IFRS 18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질의한다.

사실관계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세 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한다(종속기업 A, 종속기업 B, 재무관리법인). 종속기업 A와 B의 기능통화(LC)는 같고, 다음과 같은 외화(FC) 표시 대여금을 보유한다.

a. 종속기업 A는 제삼자에게 FC100을 대여하였다(투자자산).
b. 종속기업 B는 다른 제삼자에게서 FC120을 차입하였다(금융부채).

그러므로 연결실체는 FC20의 순부채 익스포저가 있다.

IFRS 18 문단 49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상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P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투자 범주로,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IFRS 18 문단 B65를 적용하여, 지배기업 P는 이러한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를 해당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

연결실체의 순부채 익스포저에 대한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관리기업은

제삼자와 명목금액 FC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외부 파생상품)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한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의 목적은 순부채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총익스포저의 집합(투자자산과 금융부채)이 아닌 순부채 익스포저의 식별된 외화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배기업 P는 IFRS 9을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지배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특히, 지배기업 P는 외부 파생상품과 그 파생상품으로 관리하는 위험 간의 연계성을 식별하였다.

재무관리기업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 내부거래도 체결한다(내부 파생상품).
a. 종속기업 A와 명목금액 FC100으로 외화를 매도하고 현지통화를 매입
b. 종속기업 B와 명목금액 FC120으로 현지통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

2. 검토내용과 결정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IFRS 18 문단 B70~B76에서는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분류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IFRS 18 문단 B72에서는 IFRS 9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에도, 해당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 up)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IFRS 18 문단 B74에서는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a.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b.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FRS 18 문단 B75에서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내부 파생상품이 아닌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에 대해서만 요구사항의 적용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요청서의 질의가 외부 파생상품의 연결재무제표 손익 분류에 관한 것이었다.
b.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144에서 설명하듯이, 재무보고 목적상 위험의 완화나 전환은 일반적으로 보고실체의 외부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목적 적합하다. 보고실체 내에서 위험의 이전은 보고실체 전체 관점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의 원칙과 일관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70~B76의 적용지침에 기초하여 기업은 먼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그 위험의 영향을 받는 손익의 범주와 그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외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위험

해석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승인된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실과 상황 그리고 위험관리정책에 기초하여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과 일관되게 외부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총익스포저(투자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 파생상품으로 관리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외부 파생상품은 순부채 익스포저의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지배기업 P는 IFRS 18 문단 B72를 적용하여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

의 가산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지배기업 P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무 범주로 분류가 외부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는가?

IFRS 18 문단 B74~B75의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해석위원회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기업이 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b. 기업이 상쇄되는 위험 포지션을 가진 항목 집합의 위험을 파생상품으로 관리하고, 그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생상품 손익을 영향을 받는 각 범주에 분류하려면, 기업은 실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더 큰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IFRS 18 문단 B70 및 B72에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이 외부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투자자산과 금융부채 모두의 외화위험을 총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위험은 연결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의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이러한 범주들로 분류하려면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IFRS 18 문단 B72에서 금지된다.

해석위원회는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외부 파생상품이 순부채 외화 익스포저만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는 연결손익계산서의 단일 범주인 재무 범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IFRS 18 문단 B72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외부 파생상품의 손익을 그 파생상품이 관리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청서의 사실관계에서는 그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9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정

책에 따라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 범주 분류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